

충청북도 운동선수·체육인 스포츠인권 조례안

검토보고서



행정문화위원회

수석전문위원 서정호

충청북도 운동선수·체육인 스포츠인권 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1. 발의의원 : 김성대 의원 등 7인

2. 발의일자 및 회부일자

- 발의일자 : 2023년 7월 4일
- 회부일자 : 2023년 7월 5일

3. 제정이유

- 최근 체육계 (성)폭행, 협박 등 가혹행위로 운동선수·체육인들의 인권이 보호받지 못하는 사회적 문제가 발생하고 있음. 이에 「국민체육진흥법」 제18조의2제1항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 선수 등 체육인 보호 시책 마련 의무를 부여하였음.
- 본 조례안은 스포츠인권 침해로부터 충청북도 운동선수와 체육인을 보호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이들이 인격체로 존중받도록 하고, 궁극적으로 안전하고 투명하며 공정한 운동환경을 조성하는 데 기여하고자 함.

4. 주요내용

- 스포츠인권 등 용어의 정의(안 제2조)
- 도지사의 책무 및 충청북도 스포츠인권보장 기본계획 수립·시행(안 제3조~제4조)

- 스포츠인권헌장(안 제5조) 및 스포츠인권 교육(안 제6조)
- 스포츠인권 자문단 구성 및 운영(안 제7조)
- 신고·상담 및 임시보호 시설 설치·운영 등 및 비밀누설 금지(안 제8조~제9조)
- 스포츠인권 실태조사(안 제10조).
- 협력체계 구축(안 제11조)

5. 검토의견

가. 제정의 필요성

- 고(故) 최숙현 선수 사망과 심석희 선수 미투 사건 등 스포츠폭력 사건을 계기로 드러난 체육계 인권침해 현상을 바로잡고자 「국민체육진흥법」이 여러 차례 개정되었음. 이 시기 개정된 같은 법 제18조의2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 체육계 인권침해 및 스포츠 비리로부터 체육인 보호 시책 마련 의무를 부여하였음.
- 충청북도 내에서도 시·군 직장운동경기부 등 지역선수단 내 일련의 성폭행, 성희롱, 가혹행위 의혹 등이 불거진 뒤 충청북도와 충청북도체육회가 스포츠인권 침해 조사 등의 조치를 취한 바 있음. 현재 충청북도는 도·시·군청 직장운동경기부를 대상으로 인권교육 관리와 인권실태 점검을 하고 있으나, 보다 체계적인 스포츠인권 보호 및 증진을 위한 시책을 추진해야 할 필요성이 있음.
- 본 조례안은 충청북도 운동선수와 체육인들을 스포츠인권 침해로부터 보호하고, 관련 문제가 발생할 시 알맞게 대응하며, 그들의 권익이 보호받지 못하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예방하는데 필요한 실질적인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한 것임.

- 현재 전국 17개 광역자치단체 중 스포츠인권 관련 조례가 제정·시행되고 있는 곳은 총 12곳임(인천광역시, 충청남도, 대전광역시, 대구광역시, 경상북도, 광주광역시, 전라북도, 강원도, 울산광역시, 부산광역시, 경기도, 제주도).

《 타 시도 관련 조례 제정 현황 》

번호	지역	조례명	제·개정일
1	인천	인천광역시 체육인 인권보장 및 증진 조례	2020-10-07
2	충남	충청남도 스포츠인권 보호 및 증진에 관한 조례	2020-10-05
3	대전	대전광역시 체육인 스포츠인권 조례	2020-10-14
4	대구	대구광역시 체육인 인권보호 조례	2020-12-10
5	경북	경상북도 스포츠인권 보호 및 증진에 관한 조례	2020-11-05
6	광주	광주광역시 스포츠 인권 보호 및 증진 조례	2020-12-15
7	전북	전라북도 스포츠인권 보호 및 증진에 관한 조례	2021-04-09
8	강원	강원도 스포츠인권 보호 및 증진에 관한 조례	2021-06-04
9	울산	울산광역시 체육인 인권보호 조례	2021-07-08
10	부산	부산광역시 체육인 인권 보장에 관한 조례	2021-12-29
11	경기	경기도 운동선수·체육인 스포츠인권 조례	2022-04-21
12	제주	제주특별자치도 스포츠인권 조례	2023-03-24

나. 주요내용

- 본 조례안은 11개 조문과 부칙으로 구성되어 있음.

조문	규정사항	조문	규정사항
제1조	목적	제7조	스포츠인권 자문단 구성 및 운영
제2조	정의(스포츠인권, 운동선수, 체육인)	제8조	신고상담및임시보호시설설차운영등
제3조	도지사의 책무	제9조	비밀누설 금지
제4조	기본계획 수립 등	제10조	실태조사
제5조	스포츠인권현장	제11조	협력체계 구축
제6조	스포츠인권 교육	부칙	제1조(시행일),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제3조(적용례)

○ 안 제1조(목적) 및 안 제2조(정의)

- 투명하고 공정한 운동환경 조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충청북도 운동선수 및 체육인의 권익을 보호하고 인격체로서 존중받을 수 있도록 하는데 본 조례안의 목적이 있음을 밝힘.
- 본 조례에서 사용하는 ‘스포츠인권’과 ‘운동선수’ 및 ‘체육인’의 개념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규정함.

○ 안 제3조(도지사의 책무)

- 운동선수·체육인의 스포츠인권 보장 및 증진 시책을 발굴하여 추진하고 이에 필요한 행정 또는 재정지원 노력을 하여야 하며, 스포츠인권 침해 사례가 발생한 경우 피해자 구제를 위해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는 등 도지사의 책무를 규정함.

○ 안 제4조(기본계획 수립 등)

- 도지사는 △스포츠인권보장의 기본이념 △스포츠인권 향상을 위한 전략 △체육계 인권침해(폭력 및 성폭력 포함) 관련 실태조사 등의 사항을 포함한 ‘충청북도 스포츠인권보장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고 그에 따른 시행계획을 매년 수립·시행하여야 함.

○ 안 제5조(스포츠인권헌장)

- 도지사는 도민의 의견을 최대한 수렴하여 ‘충청북도 스포츠인권헌장’을 제정하여 선포할 수 있음.

○ 안 제6조(스포츠인권 교육)

- 도지사는 도내 운동선수·체육인을 대상으로 연 1회 이상 스포츠인권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고 규정함. 다만, 코로나19와 같은 감염병 사태와 일정조율이 불가피하다는 등 피치 못할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여건에 따라 비대면 온라인 교육으로 실시할 수 있다는 단서를 붙임.

○ 안 제7조(스포츠인권 자문단 구성 및 운영)

- 스포츠인권 보장 및 증진을 위하여 도지사는 △문화체육관광국장 △충청북도의회에서 추천하는 사람, 운동선수·체육인, 스포츠인권 관련 전문가 등에 해당하는 사람 중 도지사가 임명 또는 위촉하는 사람을 자문위원으로 하여 ‘충청북도 스포츠인권 자문단’을 구성·운영할 수 있음.

○ 안 제8조(신고·상담 및 임시보호 시설 설치·운영 등)

- 도지사는 「국민체육진흥법」 제18조의10제1항¹⁾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의4제1항에 따라 폭행·협박·성폭력·부당한 행위 강요 등으로부터 운동선수와 체육인을 보호하기 위하여 신고·상담 및 임시보호 시설을 설치·운영하거나 체육단체, 성폭력 방지 및 피해자 보호에 관한 활동과 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비영리법인이나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고, 그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음.

1) 제18조의10(신고·상담 및 임시보호 시설의 설치 등) ① 지방자치단체는 폭행, 협박 또는 부당한 행위 강요 등으로부터 선수와 체육지도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신고·상담 및 임시보호 시설을 설치하거나 그 사업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20. 8. 18.>
② 제1항에 따른 신고·상담 및 임시보호 시설의 설치·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0. 8. 18.>
③ 스포츠윤리센터 및 제1항에 따른 시설에서 신고·상담 업무에 종사하거나 종사하였던 사람은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자료를 제공해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0. 8. 18.>

○ 안 제9조(비밀누설 금지)

- 이 조례에 따라 스포츠인권 보장과 증진 업무를 수행하거나 수행하였던 관계 공무원, 관계자 등은 자칫 2차 가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업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관련 자료를 제공하여서는 안 됨을 명시함.

○ 안 제10조(실태조사)

- 도지사는 제4조에 따른 기본계획과 관련 시행계획 수립을 위하여 필요할 경우 스포츠인권 실태에 관한 조사를 할 수 있고, 실태조사를 위하여 관련 기관·단체 등에 자료 제출을 요청할 수 있음.

○ 안 제11조(협력체계 구축)

- 도지사는 운동선수·체육인의 인권 보장과 증진을 위하여 스포츠윤리센터, 국가인권위원회 등 관련 기관이나 단체와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함.

다. 종합검토의견

- 본 조례안은 충청북도 운동선수와 체육인들을 스포츠인권 침해로부터 보호하여 온전히 운동에만 집중할 수 있는 투명하고 공정하며, 안전한 운동환경을 조성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였음.
- 이번 조례안 제정을 통해 충청북도 내 활동하고 있는 운동선수·체육인들의 인권이 제대로 보호받지 못하는 사회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이를 사전에 방지하고, 설사 인권침해가 발생하더라도 보다 신속하고 체계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안전망을 구축하려는 취지임.

- 이러한 조례 제정의 목적과 취지는 일응 타당하다고 판단되고, 집행부 협의 및 조례안 예고 등을 거쳤는바 절차상으로도 타당함.
- 해당 조례를 제정함으로써 충청북도 스포츠인권침해 현상에 대한 경각심을 제고하고, 스포츠인권의 존재와 가치를 재조명하며, 이를 보장하고 증진해야 하는 당위성을 확인하였음. 본 조례 제정으로 말미암아 체육계 인권침해 문제를 근절하는데 일조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됨. 또한, 운동선수와 체육인의 인권을 보호함으로써 이들의 사기진작에 기여하고 행복감과 자긍심을 높여 건강한 운동공동체 실현에 이바지할 것으로 판단되므로 특별한 이견이 없음.

붙임: 충청북도 운동선수·체육인 스포츠인권 조례안. 끝.